

1989년3월9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대안)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4.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5.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대안)
6.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7.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
8.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9.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0.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1.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
12.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
13.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4.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5.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
17.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
18.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19. 198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16건)

부의된 안건

1.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위원장 오유방 제출) 2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대안)(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위원장 오유방 제출) 3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치호 제출) 4
4.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최락도·문정수·김제태 의원 외 163인 발의) 5
5.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대안)(내무위원장 정동성 제출) 9
6.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김제태 의원 외 34인 발의) 10
7.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정상용·최기선·김홍만 의원 외 163인 발의) 10
8.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형배·유준상·박태권·강보성·윤재기·정일영 의원 외 160인 발의) 11
9.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농림수산위원장 김종기 제출) 11
10.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농림수산위원장 김종기 제출) 11
11.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12.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신상우 제출) 13

13.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노동위원장 김영배 제출)	14
14.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노동위원장 김영배 제출)	15
15.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노동위원장 김영배 제출)	16
1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18
17.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지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19
18.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행정위원장 박용만 제출)	20
19. 198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16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21
20.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대안)(계속)(노동위원장 김영배 제출)	21

(14시13분 개의)

○의장 김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오성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민주발전을 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장 오유방 제출)

(14시16분)

○의장 김재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박충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순 의원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신민주공화당 소속 박충순 의원입니다.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1988년 12월 10일 조만후 의원 외 59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 동년 12월 13일 이진우 의원, 이치호 의원, 홍세기 의원 외 45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1월 19일 박상천 의원, 조승형 의원, 오탄 의원 외 68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동년 2월 3일 박충순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호의 요건에 관한 규정 중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반드시 보호감호나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필수적 보호감호제도 및 필수적 치료감호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의 요건에 '재범의 위험성'을 명시하여 감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관의 판단에 재량을 주고 보호감호처분을 할 수 있는 범죄를 상습범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부녀매매, 강도, 강간 등 이른바 인신매매사범, 가정파괴사범 등만으로 한정하여 감호처분의 적정을 기하도록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결함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보호처분 대상자 중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 자를 삭제하였고,

둘째, 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을 삭제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보호감호의 요건으로 명시하였으며,

셋째, 보호감호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대폭 축소하여 형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 등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등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등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로 한정 별표에 규정하였고,

넷째, 보호감호는 그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되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치료감호의 종료시기를 현행 '완치'된 때에서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때로 완화하고,

여섯째,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가출소 감호 등의 면제심사를 현행 매 2년에서 매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여덟째, 사회보호위원회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7인 이내의 위원과 의사의 자격이 있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아홉째,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친족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사회보호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째,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의 시효를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고,

열한 번째, 이 법 시행 당시 7년이 경과한 보호감호 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장)
(부록1에 실음)

○의장 김재순 그러면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대안)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장 오유방 제출)

(14시22분)

○의장 김재순 의사일정 제2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의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7월 18일 조승형 의원, 강신옥 의원, 신오철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같은 달 21일에 김종호 의원 외 123인이 발의한 동 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1988년 7월 28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토의를 거친 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3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

다.

1989년 3월 6일 법안심사제3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 2개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전문개정안으로 통합한 대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진정한 기본권으로서 더욱 신장시키기 위하여 현행법 중 추상적이거나 남용의 여지가 있는 여러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 규정이 애매하거나 남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즉 첫째로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조항 중에서

①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②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③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④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 등을 모두 삭제하고

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⑥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준수사항 중에서

① 관공서의 평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부대의 군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학교, 연구기관, 도서실 등을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여 집회 및 시위가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에 대하여도 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해산은 반드시 먼저 자진해산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한 몇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첫째, 집회·시위의 자율적 규제를 통하여 성숙된 집회시위문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질서유지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자를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유지인은 백색완장을 착용하여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되, 질서유지인을 둔 경우 그 자율적 질서유지를 존중하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행진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정인참가배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집회 또는 시위를 특정인, 특정단체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그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최자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을 보장하되 이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종래에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제도만 있고 이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재결정은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하고,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도록 하였으며,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결정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소송은 3월 이내에 재결을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금지와 규제를 하는 조항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의 경우도 줄어들었고 또 형벌을 정한 경우에도 형량을 종전보다 훨씬 낮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 군인, 검사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집회 시위를 방해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구성요건이 목적범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목적'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공권력의 남

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1989년 3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아무췌록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 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대안)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장)

(부록1에 실음)

○의장 김재순 그러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치호 제출)

(14시29분)

○의장 김재순 의사일정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오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오철 의원 신민주공화당 신오철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89년 3월 3일 이인제 의원, 오탄 의원, 본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범죄가 다발하고 흉포화하여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가정과괴범 등에 대하여 중형을 부과하여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범죄의 예방효과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영리의 목적 또는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 등으로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약취·유인 또는 매매하거나 약취·유인 또는 매매된 미성년자나 부녀자를 수수·은닉 또는 국외

이송한 자와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매매 또는 국외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으며

형법상 특수절도나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

(법제사범위원장)
(부록1에 실음)

.....

○의장 김재순 그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최락도·문정수·김제태 의원 외 163인 발의)

(14시32분)

○의장 김재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문정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수 의원 내무위원회 문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7일 제145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자춘 의원 외 34인, 본 의원 최기선 의원 황병태 의원 외 57인 최락도 의원 외 70인이 각각 제출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던 중 3월 4일 본 의원, 최락도 의원, 김제태 의원 외 163인 등 야 3당에서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3월 8일 제6차 내무 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였으며 찬성 15 반대 12로 채택하여 오늘 법제사범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주민 스스로가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그 정부를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방정치의 민주화와 책임행정을 통해 중앙정치의 안정 및 발전을 가져오고 또한 고유한 문화성 및 전통성을 지닌 지방의 다양성을 온존시키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며 통치권력을 수직적으로 분권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전제화와 비대화를 통제하고 지방주민들의 정치 및 행정의 참여 폭을 확대시켜 자치능력과 민주주의 양식을 배양하는 민주정치의 훈련장을 제공하며, 정치발전의 요체인 정당정치의 제도화에 필수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이념구현과 실시의 기본취지를 성취하는 데 크게 미흡한 문제점들을 담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것 등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을 현행대로 20세로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을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하며,

셋째, 시·도의회의원과 그 장의 선거는 1989년 12월 31일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과 그 장의 선거는 1990년 12월 31일 이내에 실시하고 읍·면·동장의 선거는 1990년 12월 31일 이내에 실시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 법률안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최락도·문정수·김제태 의원 외 163인)
(이상 2건 부록1에 실음)

.....
○의장 김재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게시는 민주정의당 소속의 정해남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남 의원 민주정의당 정해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야 3당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소야대의 우리 국회가 많은 일을 해 오면서 시시비비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채 당리당략만으로 상정된 본 법안을 다수의 횡포로써 강행하려 하는 야당의 처사에 큰 우려를 표하면서 본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조기에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그동안 학계, 언론계, 직능대표 및 지방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과 시·도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민의를 폭넓게 수렴 조정된 뒤 정부안으로 지방자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약 2개월간에 걸쳐 여야가 충분한 심사를 한 후 88년 3월 8일 임시국회에 상정 현행법을 통과시키고 그 실시를 위해서 정부와 함께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의 기본골격은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킨 외국의 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회부터 먼저 구성하고 그다음 시·도의회를 구성한 후에 적절한 시기에 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 3당에서는 그동안 현행법에 의한 지방자치 실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작년 12월 3당3색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금년 2월 27일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야 3당이 각각의 안을 상정 심의해 오던 중 3월 4일에 와서야 비로소 단일안을 발의하고 이처럼 중대한 법안을 불과 3, 4일 동안에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야 3당은 단일안을 표결로 강행함으로써 우리 당 으로서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민정당에서는 지난 1월 노태우 대통령께서 밝혔듯이 여야의 진지한 토론과 성의 있는 합의로써 지방자치법안이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내무위원입니다. 야 3당이 불과 3, 4일 동안에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소관 내무위원들이 법안내용을 읽어 보기도 전에 야 3당 정책위 의장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합의로써 졸속으로 표결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여야의 초당적인 노력과 대화로써 법안을 연구하고 만듦으로써 누가 보기에든 손색이 없는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훌륭한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본 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야 3당이 마련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을 검토해 보면,

첫째,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능률성을 고려함이 없이 89년 말까지 시·도의회의원과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치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지역감정 문제 즉 지역 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지방의회와 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 국가행정의 분할현상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고 그로 인하여 지역감정의 심화는 물론 국가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개정안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며 60%의 국가 위임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그 위임사무 처리에도 심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 명백히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할 경우 부단체장의 역할은 실질적인 행정책임자로서 국가시책과 지방시책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주민직선의 단체

장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행정경륜이 많은 전문경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직업공무원이 임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란서와 이탈리아의 경우 장 선거 이후 국가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각급 자치단체에 국가지도요원을 파견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중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장과 의회를 동시에 선거할 경우 단체의 장과 의회와의 대립, 갈등 등 예상되는 행정의 혼란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는 지방의회를 구성한 후 60년 후에 장을 선출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 80년 후에 자치단체의 장 선거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국가발전과 지방발전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력 확충 등 자치기반을 가지고 지역감정의 문제를 치유한 연후에 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읍·면·동을 자치단체로 하라는 일부당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외시킨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읍·면·동장 90년 말까지 선거하라는 것은 지난날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락, 씨족 간에서의 대립 갈등과 일선 행정의 대혼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현재 행정계층구조는 3계층으로 되어 있어 행정의 비능률과 재정의 낭비 등 문제점이 많아 언젠가는 행정계층은 2계층으로 축소 개편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도와 시·군·구단위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에 고려해 볼 만한 사항으로서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계층구조 개편작업과 관련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조의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의 선거제도와 각급 지방의회의원의 정수 등을 전혀 규정함이 없이 지방선거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미루어 둔 채 그에 따른 법률안을 내놓지도 않음으로써 앞으로 지방의회 규모를 어떻게 하고, 의원정수 책정은 어떻게 한다는 기본적인 윤곽마저 법제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면 국회의 적정규모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국회법에 맡기는 것과 유사하며 이는 다른 나라의 자치법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고 법체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짐작컨대 야 3당이 단일안을 마련하면서 당리당략에 연유되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급 관청의 지도감독권, 다시 말하면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감독권은 물론 법률에 위배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 처벌에 대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권을 모두 삭제하고 있어 국가행정과 지방행정과의 조화, 시·도행정과 시·군·구행정과의 협조체제 유지 등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성과 자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는 물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래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일시에 변경함으로써 능률성과의 조화, 국가행정과의 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성 유지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한 것으로 이는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대안제시와 협상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에 일체 불응하고 야 3당이 단일안을 급조하여 내무위원회에서 표결을 강행,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목표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가 원활히 추진되는 지방화시대를 위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모두가 신중하고 진지하게 심사숙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국가와 국민, 지방자치체의 내실화를 위해서 동 법안을 부결시켜 주시고, 지방선거법 제정과 함께 다시 여야 합의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 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순** 다음은 찬성입장에 게시는 평화민주당의 최락도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도 의원** 평화민주당의 최락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8년 전 부도덕하고 부당하고 간교한 독재정권에 의해서 실종되어 버린 지방자치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5공시절 12대 국회 말기에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두환 정권은 그래도 민주정치의 구색을 맞춘다는 핑계를 가지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서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가지고는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야3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을 했던 정해남 의원께서도 중요하고 빨리 실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당에서는 이 법의 개정안을 내놓지 않음으로 해서 현행법이 4월 말까지 지방의원선거 일부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행법 가지고는 4월 말까지는 지방의원선거를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내놓지도 않고 빨리 실시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개정안을 내놓지도 않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현행법 그대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했지만 이 세계 어느 나라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치고는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독재정치 하는 나라치고는 지방자치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독재정권에서 이러한 실종된 지방자치를 찾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 가지고 야3당이 줄속으로 표결로 처리했다고 하는 비난은 개정안마저 내놓지 않는 여당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먼저 지적해 말해두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의 입장인 사람은 지역감정의 심화를 우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역감정은 독재정권이 중앙집권을 가지고 지방분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의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서 인재의 등용과 지역발전을 편중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역감정이 생겼습니다.

지역감정을 핑계 대지만 그렇다면 여당이 말하는 1년 후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지역감정이 금방 해소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말했습니다. 빨리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적어도 금년에 의회, 내년에 장을 선거하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1년 내에 그렇다면 행정의 전문성이나 능률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해서 1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함으로써 그동안에 보아 왔던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력을 가진 사람, 자기를 임명하는 데 작용해 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가 부정을 지시했을 때 거기에 따르고 해서 많은 부작용과 불법이 저질러졌습니다.

주민을 높이 모시지 않고 주민의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임명권자의 눈치만 살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맡으므로 해서 그동안에 많은 부작용이 났고 지방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빨리 선출할수록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또 공무원의 경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부자치단체의 장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이것은 행정의 능률성이나 지속성을 핑계로 해서 지방자치를 중앙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독재를 일선에까지 더 연장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라고 지적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야말로 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에 해당하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임명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정을 잘 알고 행정에 경험 있는 사람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임명케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부자치단체의 장을 임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읍·면·동장의 선출을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자유당 시절에 6·25 동안 피난 중에도 우리가 읍·면의회를 했습니다. 지금 읍·면의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우선 읍·면·동장을 선출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읍·면·동장을 직접 주민이 뽑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많은 일들을 보살피게 하자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이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큰 소명을 가진 우리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모든 주민이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던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지역주민에게 지방자치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안이 내무위원회를 통과된 그 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해서 4월 말까지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금년과 내년에 걸쳐 함으로써 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이 지방자치법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에 의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찬성의 연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표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가 155인, 부 119인, 기권 한 사람, 따라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성 제출)

(14시59분)

○의장 김재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의원 내무위원회 김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 대안은 지난 2월 14일 문정수 의원, 심완구 의원, 최기선 의원 외 57인이 제출한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을 2월 27일 제145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던 중 2월 28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0인, 조세형 의원 정균환 의원 정상용 의원 외 68인, 김제태 의원 외 34인이 제출한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과 3월 7일 최락도 의원 문정수 의원 김홍만 의원 외 163인 등 야 3당에서 공동발의 한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각 안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축조심의 등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결과 이상 5건의 원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출키로 하여 3월 8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있어서 옥외집회, 방송대담 등 정당의 찬반운동을 허용하고 투표인명부사본의 교부, 정당의 투개표참관인 추천 등을 규정하는 등 국민투표제도의 민주성을 제고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하고,

둘째, 정당법상 정당원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셋째, 국민투표운동을 위하여 연설회를 구·시에 있어서는 각각 3회 이내, 군에 있어서는 각각 읍·면의 수 이내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국민투표운동을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찬반별로 각 3회 이내 이용할

5.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대안)(내무위원장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국민투표
일 전 18일까지 동시에 공고하도록 하며,

여섯째, 투표참관인은 정당이 각각 3인을 선거
권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이 12인을 선정하
여 당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
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대안)

(내무위원장)

(부록1에 실음)

○의장 김재순 그러면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김제태 의원
외 34인 발의)**

(15시4분)

○의장 김재순 의사일정 제6항 선거관리위원회
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제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태 의원 논산 출신 내무위원회 김제태 의
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2월 24일 본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2월 27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기로 하여 3월 8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채택하였습니
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정수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없지

아니하므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정수를 현
행대로 두되, 현원(現員)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
우 현원의 정수로 보도록 하며, 정당추천위원 구
비서류의 간소화 등 기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현
행대로 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3
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이 될 경우 정수의 규정에
불구 현원을 정수로 보고,

둘째, 정당추천위원 추천 시 구비서류 중 ‘신원
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
고 추천당부 중 ‘당 연락소’를 ‘구·시·군 연락
소’로 하며,

셋째, 별정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인 위원의 신분관계에
대한 국가공무원법과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정년
에 달하였을 경우와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김제태 의원 외 34인)

(이상 2건 부록1에 실음)

○의장 김재순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
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정상용·
최기선·김홍만 의원 외 163인 발의)**

(15시7분)

○의장 김재순 의사일정 제7항 사회정화운동조
직육성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정균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환 의원 내무위원회 정균환 의원입니다.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7월 18일 정상용 의원, 최기선 의원, 김홍만 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989년 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2월 27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사회정화위원회에 관하여는 지난해 국정감사 예산심사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친 논의가 있었으므로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면서 내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 표결 처리하기로 하여서 3월 8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찬성 16인, 기권 11인의 표결 결과로 원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은 독재정권력의 합리화 수단으로서 사회정화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서 이 법에 의해 지역, 직장, 직능단체, 학교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설치된 수많은 이른바 정화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정부기관 위에 군림하여 왔으므로 이 같은 사회정화위원회를 해체하기 위하여 동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
(정상용·최기선·김홍만 의원 외 163인)
(이상 2건 부록1에 실음)

.....

○의장 김재순 그러면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형배·

유준상·박태권·강보성·윤재기·정일영 의원 외 160인 발의)

9.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농림수산위원장 김종기 제출)

10.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농림수산위원장 김종기 제출)

(15시11분)

○의장 김재순 의사일정 제8항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이희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천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이희천 의원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9년 3월 4일 이형배 의원, 유준상 의원, 박태권 의원, 강보성 의원, 윤재기 의원, 정일영 의원 외 16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3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형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당초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김종기 의원, 권해옥 의원, 이형배 의원, 강보성 의원, 정일영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어 수정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농·수·축협조합임원임면에 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되었고, 농·수·축협법이 개정되어 그 운영이 자율화되고 협동조합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단위조합장의 능동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농협법에서 정관이 정하는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조합장의 후보자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장의 피선거권이 크게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선출에는 일정한 기간 조합원의 신분만을 계속 보유하는 것만을 규정토록 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유능한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단위조합장의 피선거권의 요건을 조합원신분을 일정기간 계속 보유하는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납입출자를 요건으로 하는 조문은 삭제함으로써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수정이 유로서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최고 경영자이므로 평소 조합에 대한 관심도와 이용도가 높은 인사 중에서 선출하여 조합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합장 피선거권의 요건 중 납입출자제한 조문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의 선거일 공고일 기준 조합원 평균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가 제안한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경우도 개정내용이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과 일치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 조)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이형배·유준상·박태권·강보성·윤재기·정일영 의원 외 160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농림수산위원장)
(이상 4건 부록1에 실음)

.....

○의장 김재순 그러면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17분)

○의장 김재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동력자원위원회 金政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政吉 議員 동력자원위원회 金政吉 의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2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정부소유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동 공사가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자본금을 5조 원에서 6조 원으로 1조 원을 증액하고 정부의 전액출자를 100분의 51 이상으로 조정하며,

둘째, 공사의 자본금을 출자증권에서 주식으로 변경하고,

셋째, 민간소유주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익배당을 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9년 2월 22일 제145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하였고, 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축조심사 하였으며 2월 28일 제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이 개정법률안은 한국전력공사를 국민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

여 주식을 공개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적절하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당 위원회에서 서는 국민주의 보급이 당초 계획대로 중·하위 계층의 국민에게 소득재분배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과 현재 원자력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동력자원부가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원전안전관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 행정체계를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두 가지 의견을 정부 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동력자원위원회)
-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
(정부)
- (이상 2건 부록1에 실음)

.....

○의장 김재순 그러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신상우 제출)

(15시21분)

○의장 김재순 의사일정 제12항 국민의료보험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평화민주당 소속 김충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마련한 국민의료보험법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일원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이 송두호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취지의 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안이 홍기영 의원, 박영숙 의원, 이철용 의원, 정기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외 6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한편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이 박병선 의원 외 34인과 따로 정부로부터 그리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이 박병선 의원 외 34인과 따로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6건의 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전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균등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라는 점과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989년 2월 10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보다 진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7차에 걸쳐 진지한 검토를 계속한 결과 현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직장, 지역, 직종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의료보험체계를 통합일원화 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원리인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는 내용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일안에는 의료보험체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통합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2년 6월의 실시준비기간을 두었으며, 정부에서 1989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도시지역의료보험은 통합될 때까지 예정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부칙의 경과조치규정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단일안을 1989년 3월 8일 제145회 국회 제6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당 위원회 대안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질의 의료혜택을 보장하고, 지역 간 계층 간 또는 직종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직장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지역보험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의료보험체계를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보험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료보험심의위원회

회를 두되 종전의 자문기관 기능에서 심의·의결기관 기능으로 그 성격을 전환시켰으며, 둘째,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국민의료보험관리

공단으로 하여 공단의 이사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셋째, 의료보험수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수가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넷째, 요양취급기관계약은 공단과 요양취급기

간 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다섯째, 보험요율은 피보험자의 표준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 일정 표준소득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누진율을 적용하고 다만 일정 표준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 재산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보험요율을 적용되 일정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조합, 지역조합, 지역임의조합의 설립·조직 및 보험관리운영상 부득이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일곱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 시행으로부터 1월 6일 이내에 해산하고, 직장조합 지역조합 지역임의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6월 이내에 해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전 국민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본 법안 대안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으로 1981년 국회 정경회

가 확인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의지가 7년여 만에 명백하게 확립되는 장거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

(보건사회위원장)
(부록1에 실음)

.....
○의장 김재순 그러면 국민의료보험법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노동위원장 김영배 제출)

(15시29분)

○의장 김재순 의사일정 제14항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희철 의원 외 4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동위원회 김병용 의원 나오셔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용 의원 노동위원회의 김병용 의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1월 25일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상수 의원 외 70인이 제안하였습니다. 동년 12월 5일 이인제 의원, 노무현 의원 외 58인이 제안했습니다. 1989년 1월 25일 김병용 의원 외 34인이 각각 발의하여 3개 법안이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개 법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노동관계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차에 걸쳐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3개 법안을 통합하여 이 대안을 노동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기준법을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60%에서 70%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법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으로 단축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을 1991년 9월 30일까지 주 46시간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이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1990년 9월 30일까지 주 46시간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법안을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순 다음은 조희철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정당 간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주고받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안건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정당을 초월해서 이 크로스보텀 하는 안건이 되지 않나 하고 사회하는 사람이 기대를 했는데 역시 그렇지 않고 정당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건은 뒤로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노동위원장 김영배 제출)

(15시37분)

○의장 김재순 그러면 의원이 안 계셔서 뒤로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13항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노동위원회 이인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의원 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제 의원입니다.

방금 근로기준법 수정안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제안설명을 못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88년 11월 25일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이 이상수 의원 외 70인으로부터 발의되고, 동년 12월 5일에 정정훈·이인제·노무현 의원 외 57인이 발의한 법안과 1989년 1월 25일

김병용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법안 등 3개의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건의 개정법률안 중 2건의 개정법률안은 1988년 12월 13일 제144회 국회 제12차 노동위원회에서, 1건의 개정법률안은 1989년 2월 20일 제145회 국회 제1차 노동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3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보고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4차에 걸친 회의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3개의 개정안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단일안으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대안은 1989년 3월 7일 제145회 국회 제6차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됨으로써 3개의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노동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준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둘째, 제3자개입금지 제외 범주에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하였으며,

셋째, 직장폐쇄에 5일간의 냉각기간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지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노동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노동위원장)

(부록1에 실음)

○의장 김재순 그러면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노동위원회 김영배 제출)

(15시42분)

○의장 김재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노동위원회 노무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의원 노동위원회 노무현 의원입니다.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면, 1988년 11월 25일 이상수 의원 외 7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8년 12월 5일 이인제·노무현·정정훈 의원 외 57인이 발의한 개정안 그리고 1989년 1월 25일 김병용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개정안 등 3건의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개정법률안을 회부순서에 따라 2건은 1988년 12월 13일에, 다른 1건은 1989년 2월 20일에 노동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3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6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3개 법안을 수차 병합심의를 한 결과 3개의 개정안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단일안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 대안은 1989년 3월 7일 제145회 국회 제6차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채택키로 의결함으로써 3개의 의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대안을 노동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둘째,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때로부터 성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3자개입금지 제외 범주에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하였고,

넷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하는 절차를 규정하였고,

여섯째,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일곱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노동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노동위원장)

(부록1에 실음)
.....

○의장 김재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민주정의당 소속의 노인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환 의원 민주정의당 노인환 의원입니다.

민주당 노무현 의원이 낸 것을 반대토론을 좀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노동조합법 중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법은 노사관계의 기본법으로서 현대 산업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의 개정에는 있어서는 노사의 균형은 물론 공익에도 부합되도록 모든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민·민주·공화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신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의 삭제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신축성 있게 개정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진일보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우리의 산업사회와 노동현실이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8조의 공무원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별권력관계에서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와 같은 차원에서 노사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보수 등 근로조건 또한 예산과 법령에 의하여 정치적 입법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므로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여 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교원 등에게까지 노조활동을 확대 허용하는 것은 국가사무의 안정적 수행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노동조합의 설립시기를 제13조4항과 같이 개정하여 설립신고를 한 때로 할 경우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고, 미비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후에 신고증의 교부를 취소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노조임원의 신분보장규정을 안 제23조2항에서 신설하고 있는바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미리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현행법으로도 노동조합의 임원의 인사가 노조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법 제39조에 해당되므로 별도조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안 제30조에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자료제출건의 삭제 문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독선적으로 운영되어 조직 내에 마찰과 갈등이 심화될 경우 노동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행정관청의 간여(干與)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관청이 필요 시 노동조합에 대하여 경리사항과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존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조항들을 포함하여 개정된다면 모처럼 새로이 정립되어가는 노사관계의 안정에 저해요인이 되고 노사관계의 불안정은 노사의 불이익은 물론 산업평화가 깨지고 국가경제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입장에서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순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평화민주당의 이상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평화민주당의 이상수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여야가 5공유산을 청산하고 민주화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서 악법을 폐폐하기로 악법개폐특위까지 만들어 놓고도 이 정도의 개정안이 제대로 합의에 의해서 통과되지 않고 찬반토론을 한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 개정법률안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법률안의 내용은 정말 양보와 양보를 거듭해서 최소한의 개정법률안입니다.

노동조합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었던 복수노조의 금지조항이라든지, 제3자개입 금지조항은 완전히 야당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악법을 폐폐하겠다는 여당이 어떻게 해서 이런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취하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어제 민정당에서는 만일에 노동조합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국민이 뽑아 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정부가 협박을 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금 노인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반대의견의 가장 주된 논지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

3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다른 면에서 볼 때에는 국가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국가의 봉사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임무의 공익성과 공무원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의 보호는 서로 면밀히 검토해서 조화로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야 3당은 현재의 우리 실정을 정확히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이라든지, 경찰관들, 소방공무원들은 아예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행동권은 아예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면서도 5급 이상은 인정하지 않고 6급 이하만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은 개정안이라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노동법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자본가를 위한 법입니다.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의 안전판입니다.

증기기관의 벨브를 보십시오. 증기를 적절히 빠져나오도록 압력을 풀어 주지 않으면 증기기관은 파괴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절히 풀어주는 안전판이 있어야만 자본주의사회는 제대로 영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도 진정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안전판으로 역할하려면 적당히 노동자들이 그 규범력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야당이 제안한 노동조합법은 현실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노동3권은 현재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고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단체행동권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민주화의 기틀을 확립하고 소외된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다 같이 전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민주화의 기틀이 이 법의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께서는 이 법을 개정할 대로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84인 중 가 151인, 부 126인, 기권 7인으로서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16시2분)

○의장 김재순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송현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섭 의원 건설위원회 송현섭 의원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매년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여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건설부장관은 매년 표준지를 선정 공시

기준일 현재의 토지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 등에 관한 보상, 국공용지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셋째, 표준지를 선정 관리 표준지가격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며,

넷째, 건설부장관이 실행한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친 자에게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9년 2월 23일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4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9년 3월 7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지가공시의 주요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시지가를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토지거래 시 공시지가를 지표로 하여 거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넷째,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5인 이내로 제한하는 등 미비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입니다.

이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
(정부)
(이상 2건 부록1에 실음)

○의장 김재순 그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16시7분)

○의장 김재순 의사일정 제17항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이 안건은 1988년 12월 17일 제144회 정기국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대통령이 헌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12월 30일 자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의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재의요구 이유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미 4당 합의로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었으므로 구두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 조)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

(정부)

(부록1에 실음)

○의장 김재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단에서도 협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나 토론신청도 없으므로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정무 의원, 이용선 의원, 박석무 의원, 장석화 의원, 임무웅 의원, 김영진 의원, 박태권 의원, 최무룡 의원, 이상 여덟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국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는 다음 투표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설명해 주세요.

○의사국장 오성균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투표용지의 ‘가’ 문안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즉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바 있는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그 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2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김재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2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집계하니 282매올시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82매로서 명패수와 합치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2표 중 가 149표, 부 133표로서 기권 무효 공히 없습니다.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14항이었던 근로기준법에 대한 처리가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다마는 짧은 시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9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정부 제출)

○의장 김재순 의사일정 제18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우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의원 행정위원회 김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정부에 의하여 거부된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44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정부로부터 거부됨에 따라 해직공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간사회의 및 해직공무원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지하고 활발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어제 4당 합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위원회는 3월 8일 제9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인쇄물에 법사위원회 체계·수정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수정대비표를 별도로 첨부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로서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직한 공직자 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조속히 이들 해직공직자들이 계속해서 국가민주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위로 격려해 주고 동시에 향후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

에 의하여 해직된 1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총봉급액 상당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이 법에 의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해직 당시의 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1988년도 봉급월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상금 지급시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1989년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 확보 후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 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이 특별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1980년 당시 정부산하기관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직공무원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지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법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정부) (부록1에 실음)

○의장 김재순 그러면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198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16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17시15분)

○의장 김재순 의사일정 제19항 198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국정감사보고서는 16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개 상임위원회의 198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8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 16건이 각각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국정감사보고서 가운데 정부가 수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 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 이송하여 수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참 조)

198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16건) (각 상임위원회) (부록2에 실음)

○의장 김재순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14항 근로기준법을 상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만하게 각 교섭단체 대표들에 의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안설명 하실 분이 제안설명의 문장을 기초하는 데 약간 2, 3분 시간을 요하는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좀 바쁘시더라도 그대로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대안)(계속)

(노동위원장 김영배 제출)

(17시24분)

○의장 김재순 조금 전 심의 도중에 교섭단체간의 협의를 위해서 심의를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4항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조희철 의원 외 47인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조희철 의원의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환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다시 동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환 의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민정당 소속 노인환 의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원내 4당 합의로 제안하게 된 것으로 그 제안이 유와 수정하게 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갱내 지하작업에 있어서는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43조제2항과 같이 입출갱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경우 입출갱시간이 약 2시간이나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 정도 밖에 안 될 뿐만이 아니고 또 탄광별로 각각 입출갱시간이 상이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시간 운영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안 제43조1항 중 현재 36시간을 34시간으로 하고 동 조 2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3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990년 9월 30일까지 35시간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300인 미만은 91년 9월 30일까지 35시간으로 하고 그리고 300인 이상은 1990년 9월 30일까지 35시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수정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노동위원장)

(부록1에 실음)

.....

○의장 김재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4당 총무단이 합의된 바가 있는 것으로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마는 회기를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20일간의 회기로 2월 13일 개최된 제145회 국회 임시회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4당 합의하에 5일간 더 연장되어 오늘로써 2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는 방한한 조지 부쉬 미 합중국대통령을 환영하고 그분의 연설을 듣는 기회도 가지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기를 연장해 가면서 주요 정치민생관계 법안을 회기 중에 처리하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를 마치는 이 순간에도 정치사회 각 부문에 걸쳐서 풀어야 할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많은 부분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여망을 폭넓게 수렴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민주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치의 본무대로서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1차적인 책무는 모든 문제를 양식과 순리에 따라서 풀어 나감으로써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둘러싼 대결과 갈등의 모든 문제는 화해와 타협의 정치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풀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정치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정치는 과학이 아니라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깊이 새겨 볼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못 다룬 많은 숙제들을 안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마는 다음 번 국회가 다시 열릴 때까지 이번 임시국회를 돌이켜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많은 것을 재삼 재사 숙고하셔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끝이 없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다음 국회에서 우리 모두 다시 건강한 몸으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국정을 협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제81차 IPU총회에 참석하시는 박정수 단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많은 성과를 안고 돌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 의원 수(290인)

○출석 국무위원

상 공 부 장 관	한 승 수
동 력 자 원 부 장 관	이 봉 서
노 동 부 장 관	장 영 철
총 무 처 장 관	김 용 갑

○출석 정부위원

보 건 사 회 부 차 관	이 두 호
---------------	-------

【보고사항】

○의안 제출

농산물가격보장에 관한 건의안

(3월 8일 박경수 의원 외 41인 발의)

발의자 박경수

찬성자	강보성	강삼재	강신욱
	김 남	김덕룡	김동규
	김동영	김동주	김봉조
	김성용	김우석	김일동
	金正吉	류승규	류승빈
	문정수	문준식	박관용
	박재규	박종률	박태권
	백찬기	서석재	서청원
	석준규	신영국	신하철
	심완구	오경의	이행구
	장석화	정상구	정재문
	정정훈	최기선	최정식
	허재홍	황대봉	황명수
	황병태	이택석	

농림수산물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도시영세민 농촌이주에 관한 건의안

(3월 8일 박경수 의원 외 41인 발의)

발의자 박경수

찬성자	강보성	강삼재	강신욱
	김 남	김덕룡	김동규

김동영	김동주	김봉조
김성용	김우석	김일동
金正吉	류승규	류승빈
문정수	문준식	박관용
박재규	박종률	박태권
백찬기	서석재	서청원
석준규	신영국	신하철
심완구	오경의	이행구
장석화	정상구	정재문
정정훈	최기선	최정식
허재홍	황대봉	황명수
황병태	이택석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3월 8일 농림수산물위원장 김종기 제출)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3월 9일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편특별위원장 오유방 제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3월 9일 법제사법위원장 이치호 제출)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대안)

(3월 9일 내무위원장 정동성 제출)

국민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3월 9일 보건사회위원장 신상우 제출)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3월 8일 노동위원장 김영배 제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3월 9일 노동위원장 김영배 제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3월 9일 행정위원장 박용만 제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3월 9일 조희철 의원 중 47인 발의)

발의자 조희철

찬성자	강재섭	권해욱	김기배
	김길홍	김동인	김명섭
	김완태	김인영	金正吉
	김종기	김중위	김진영
	김한규	박우병	박지원
	박진구	박희태	徐廷和
	손주환	신영순	신재기

심기섭 안영기 양경자
 오유방 오한구 유기천
 유수호 이강희 이덕호
 이영문 이운자 이재황
 이진우 이치호 이태섭
 장영철 전용원 정동호
 정종택 정창화 조남욱
 홍세기 황병우 황성균
 김덕규 황낙주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3월 9일 노인환 의원 외 35인 발의)

발의자 노인환
 찬성자 강재섭 김동인 김윤환
 金政吉 남재희 도영심
 박우병 박진구 박희태
 손주환 안찬희 양경자
 오유방 유수호 이강희
 이운자 이재황 이진우
 이치호 이태섭 장영철
 전용원 정종택 지연태
 채문식 홍세기 김영배
 이상수 이해찬 한광욱
 김재광 노무현 이인제
 김병용 김용채

○의안 심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

(1988년 12월 10일 조만후 의원 외 59인 발의)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1988년 12월 13일 이진우 의원 이치호 의원
 홍세기 의원 외 45인 발의)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1월 18일 박상천 의원 조승형 의원 오탄 의원
 외 68인 발의)

사회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2월 3일 박충순 의원 외 34인 발의)
 (이상 4건 3월 9일 민주발전을위한법률
 개폐특별위원장 오유방 보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988년 7월 18일 조승형 의원 강신욱 의원
 신오철 의원 외 163인 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988년 7월 21일 김종호 의원 외 123인 발의)
 (이상 2건 3월 7일 민주발전을위한법률
 개폐특별위원장 오유방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3월 3일 이인제 의원 오탄 의원 신오철 의원
 외 163인 발의)

(3월 8일 법제사법위원장 이치호 보고)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88년 12월 9일 구자춘 의원 외 34인 발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88년 12월 15일 문정수 의원 최기선 의원
 황병태 의원 외 57인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1988년 12월 15일 최락도 의원 외 70인 발의)

(이상 3건 3월 9일 내무위원장 정동성 보고)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3월 4일 최락도 의원 문정수 의원 김제태
 의원 외 163인 발의)

(3월 9일 내무위원장 정동성 보고)

수정 의결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

(2월 14일 문정수 의원 심완구 의원 최기선
 의원 외 57인 발의)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

(2월 28일 김제태 의원 외 34인 발의)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

(2월 28일 조세형 의원 정균환 의원 정상용
 의원 외 68인 발의)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

(2월 28일 김태호 의원 외 120인 발의)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

(3월 7일 최락도 의원 문정수 의원 김홍만
 의원 외 163인 발의)

(이상 5건 3월 9일 내무위원장 정동성 보고)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2월 23일 김제태 의원 외 34인 발의)

(3월 9일 내무위원장 정동성 보고)

수정 의결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

(1988년 7월 18일 정상용 의원 최기선 의원
 김홍만 의원 외 163인 발의)

(3월 9일 내무위원장 정동성 보고)

원안대로 의결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3월 4일 이형배 의원 유준상 의원 박태권 의원 강보성 의원 윤재기 의원 정일영 의원 외 160인 발의)

(3월 8일 농림수산위원장 김종기 보고) 수정 의결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

(2월 17일 정부 제출)

(3월 7일 동력자원위원장 황낙주 보고) 원안대로 의결

국민건강보험법안

(1988년 11월 16일 송두호 의원 외 59인 발의)

국민의료보험법안

(2월 14일 홍영기 의원 김충조 의원 박영숙 의원 이철용 의원 정기영 의원 외 66인 발의)

국민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1988년 11월 21일 정부 제출)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2월 17일 박병선 의원 외 34인 발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1988년 12월 21일 정부 제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2월 17일 박병선 의원 외 34인 발의)

(이상 6건 3월 9일 보건사회위원장 신상우 보고)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1988년 11월 25일 이상수 의원 외 70인 발의)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1988년 12월 5일 정정훈 의원 이인제 의원 노무현 의원 외 57인 발의)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1월 25일 김병용 의원 외 34인 발의)

(이상 3건 3월 8일 노동위원장 김영배 보고)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1988년 11월 25일 이상수 의원 외 70인 발의)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1988년 12월 5일 정정훈 의원 이인제 의원 노무현 의원 외 57인 발의)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1월 27일 김병용 의원 외 34인 발의)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988년 11월 25일 이상수 의원 외 70인 발의)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988년 12월 5일 정정훈 의원 이인제 의원 노무현 의원 외 57인 발의)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월 27일 김병용 의원 외 34인 발의)

(이상 6건 3월 9일 노동위원장 김영배 보고)

이상 1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

(1월 6일 정부 제출)

(3월 9일 건설위원장 오용운 보고)

수정 의결

○의안 철회

국민운동관련단체의지원에관한법률안

(1988년 8월 3일 강우혁 의원 외 22인 발의)

3월 9일 발의자 철회요구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3월 9일 조희철 의원 외 47인 발의)

3월 9일 발의자 철회요구

○청원 제출

전 서울구치소(경성감옥) 원형보존을 위한 공원조성사업 중지 에 관한 청원

(3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주공아파트 361-104 정준영 외 2인으로부터 노승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서울시는 전 서울구치소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역사적 유물을 파괴하고 있는바 이 지역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민족정신의 산교육의 장으로 조성해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서울시에서는 전 서울구치소 자리에 87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일제침략의 생생한 현장일 뿐 아니라 고행의 상징이며 그 옥사 긴 담장 망루 등 그 자체가 중요한 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철거하는 것은 부당함.
3. 순국의 현장인 이곳을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민족정신의 산교육의 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청원임.

3월 8일 행정위원회에 회부

정주시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

(3월 7일 전라남도 정주시 장명동 121 박명

규 외 2189인으로부터 김원기 의원 박실 의원 송현섭 의원 이원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87. 7월 정읍군 정주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명칭이 정주시로 되었는데 본래의 명칭인 정읍시로 변경해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정주시는 이조 때부터 정읍으로 불리다가 1931년 읍으로 승격되면서 읍 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정주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들 간에는 통칭 정읍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고 그 어음이나 한글표기에 있어 평북 정주와 같고 영어로는 전주·청주와 유사하여 착오와 오해가 있는 등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본래 명칭인 정읍시로 변경해 주기 바라는 청원임.

3월 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

철도건널목 설치에 관한 청원

(1월 23일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보통리 3반 박대선 외 41인으로부터 박경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자동차검사 민간대행업권 회복에 관한 청원

(2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품빌딩 919-1 이석부 외 25인으로부터 백찬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

한시택시사업자 구제에 관한 청원

(2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12-171 백남열 외 73인으로부터 김득수 의원 연제원 의원 백찬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경영개선에 관한 청원

(2월 17일 부산직할시 동래구 연산5동 233-3 전국화물자동차지입차주협의회 부산지부 지부장 황선호로부터 정정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4건 3월 8일 교통체신위원장 이대엽 보고)

아파트입주융자금 이율인하 등에 관한 청원

(1988년 8월 17일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주공아파트 202동 207호 이상화로로부터 조홍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청도운문댐 수몰지구주민 보상에 관한 청원

(1988년 10월 10일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동 689 김만석 외 241인으로부터 이재연 의원의 소개로 제출)

아파트입주융자금 이율인하 등에 관한 청원

(1988년 11월 5일 인천직할시 남구 구월2동 (구월주공아파트 210동 402호) 류해우 외 1226인으로부터 문동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건축직공무원에 대한 건축사특별전형제도에 관한 청원

(1988년 11월 30일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산본리 주공 132-304 강강철 외 5252인으로부터 이원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정릉3동 취락지구개발에 관한 청원

(2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산 1-1 이규수 외 70인으로부터 이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5건 3월 8일 건설위원장 오용운 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88년 11월 9일 경기도 성남시 단대3동 3256 이흥희로부터 이찬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

국민학교 임시교사경력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청원

(2월 3일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25-21 오효석 외 22인으로부터 김인곤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3월 8일 행정위원장 박용만 보고)

의료보험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88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75 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출로부터 박병선 의원 신철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

(3월 8일 보건사회위원장 신상우 보고)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88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리 이시우로부터 김동인 의원의 소개로 제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88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23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우정으로부터 박영숙 의원 이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청원

(1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으로부터 류승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3건 3월 8일 노동위원장 김영배 보고)

이상 1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보고서

198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988년 12월 20일 법제사법위원장 이치호

제출)

198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월 31일 행정위원장 박용만 제출)

198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월 17일 문교공보위원장 정대철 제출)

198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정정보고서

(3월 8일 건설위원장 오용운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치악산국립공원 진입로 42번국도 확장·포장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3월 8일 정부 제출)

(부록3에 실음)